

# 圖書館開發을 爲한 國家計劃의 促求

지난 2月 24日~25日. 兩日間에 開催된 第 13次 定期總會에서 採擇된 建議事項을 3月 22日 文教部 및 關係要路 26個所에 提出하였다.

本協會는 政府에 對하여 圖書館育成을 爲한 年次의 인 國家計劃의 樹立을 促求하며, 同計劃에는 다음과 같은 事業들을 包含시킬 것을 建議한다.

## 1. 圖書館行政部署의 設置

〈文教部內에 圖書館行政을 專擔할 行政部署의 新設〉  
現在 圖書館行政은 文藝體育局 社會教育課에서 管掌하고 있다. 同課는 圖書館事務 以外에 數多한 業務를 管掌하고 있으므로 現在 以上으로 圖書館事業에 置重할 수가 有을 것이다. 我們 나라 圖書館의 不振相은 大部分 圖書館行政의 貧困에 基因하고 있다. 따라서 圖書館行政을 專擔할 行政部署를 文教部內에 設置하는 일이 圖書館育成策의 先決問題가 되는 것이다. 同部署의 規模는 初中等學校圖書館, 大學圖書館, 公共圖書館 等 모든 種類의 圖書館을 管掌하게 될 것이므로, 局規模가 合當할 것이나 即刻的인 局의 設置가 困難하면 最少限 課規模은 되어야 할 것이다.

## 2. 兩國立圖書館의 合併

〈大韓民國國會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의 合併〉  
國家書誌活動, 綜合目錄의 作成, 印刷 카드의 作成配付, 貴重資料의 마이크로化 等 國家規模의 事業을 擴張乃至 促進하기 爲하여서는 兩國立圖書館이 併合되어 그 資源(人力, 資金, 藏書 等)을 集中的으로 動員하여야 한다.

併合된 國立圖書館이 國會에 所屬될 것인지 文教部에 所屬될 것인지 아니면 大統領直屬으로 둘 것인지에 關하여서는 將次의 輿論와 政策에 依하여 決定될 問題이지만 그 館長은 級어도 長官級으로 補하여야 할 것이다. 現在 我們 나라 國會圖書館長은 一級公務員으로 補하고 있으며, 日本의 國立國會圖書館長은 副總理에 關當하는 職位를 차지하고 있다.

## 3. 公共圖書館의 近代化를 위한 政策作業

### (1) 公共圖書館職制(職種包含)의 一元化

公立公共圖書館의 所屬이 兩分 即, 一群의 圖書館은

市, 郡教育長에게, 一群의 圖書館은 市長, 郡守에게 託属되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職制와 職種 亦是 二元化되어 있는 實情이다.

職種에 있어서 前者는 國家公務員으로서의 職種이 適用되는 反面에 後者는 地方公務員으로서 職種이 適用되고 있다. 그러나 地方公務員의 職種에는 司書職種이 全然 없으므로 一般行政職種으로서 充當되고 있다.

또한 國家公務員 職種으로서의 圖書館의 司書職種은 一般行政職群 속에 內包되고 있으나 博物館의 學藝職은 獨立된 職群으로서 司書職보다 別途의 取扱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司書職도 當然히 博物館의 學藝職과 같이 一般行政職群에서 分離하여 取扱해야 할 것이다. 公務員任用令의 改正이 必要하다.

이와 같이 二元化된 矛盾을 是正하기 위하여 文教部는 現在 市長·郡守에 屬해 있는 公共圖書館을 모두 市郡教育長에게 移管하도록 强力히 措置함으로써 所屬의 一元化((7項에 詳述)와 함께 職制, 職種의 一元化를 期하도록 施策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 (2) 公共圖書館의 定員確保(法第5條3項)

① 專門職(司書職)과 非專門職別(事務職과 勞務職)로 比例를 두어 策定한다. 一例로 美國圖書館協會에서 1956年에 發刊한 公共圖書館奉仕基準에 依하면 司書職數는 全體職員數의  $\frac{1}{3}$ 을 確保하도록 되어 있다.

② 公立公共圖書館의 定員實態는 絶對的으로 不足할 뿐 아니라 아주 悲慘한 狀態에 있다.

絕對數의 定員이 不足하므로 舉皆의 圖書館은 臨時職員으로서 充當되고 있다. 이들 臨時職員으로서 圖書館의 正常化된 運營이란 到底히 期約하기 어렵다.

③ 定員의 不足은 公共圖書館이 不振하는 重大한 原因의 하나가 되고 있다.

### (3) 公共圖書館施設의 現代化

法第5條第3項(令第2條)에 依한 公共圖書館의 施設基準에 到達하도록 既設 圖書館을 開發한다. 建物, 內部設備, 基本備品, 行政裝備, 視聽覺機材等의 具備가 要하다.

### (4) 公共圖書館의 圖書館資料의 擴充

祖國近代化作業 特司 經濟, 產業, 科學, 技術 等 分野의 開發에 뒷 바침이 될 수 있는 文獻의 具備가 時急히 要請된다.

現在 우리 나라의 公共圖書館은 既設, 新設의 圖書館을 莫論하고 極甚한 藏書의 貧困을 느끼고 있는 實情이다.

歷史가 오랜 既設 圖書館의 藏書는 거의 낡아빠진 失効圖書(日書)로서 채워져 있다. 모든 分野의近代化를 부르짖고 또한 實踐하고 있는 이 時點에 있어서 열글이 뜨거울 程度이다.

또한 最近에新生된 圖書館의 藏書는 不過 1,000卷乃至 2,000卷 未滿의 規模로서 이를 群小公共圖書館의 資料의 貧困性은 이루 形言할 수 없는 實情이다.

#### (5) 公共圖書館의 奉仕活動

舉皆의 公共圖書館의 奉仕活動은 館內奉仕(主로 閱覽)에만 置重하고 있는 形便이며 그나마 利用者의 80%乃至 90%가 學生層으로서 그들의 自習室化(貸席程度)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館內活動中에서 重大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參考業務을 비롯한 主題別開架閱覽室의 運營은勿論 展示活動, 學藝集會等과 諸文化活動은 염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더욱이 公共圖書館 本然의 使命인 成人과 어린이에 대한 奉仕活動은 皆無한 狀態이므로 叙上에 指摘된 館內의 諸奉仕機能이 發揮되자면 施設의 改善과 아울러 有能한 專門職의 配置가 急先務이다.

對外活動으로서는 資料의 館外貸出을 비롯한 巡回文庫, 分館, 配本所, 북도覽, 出張映寫等의 諸活動을 列舉할 수 있는데 現在 이와 같은 對外活動을 할 수 있는 公共圖書館은 한 곳도 없다.

圖書館의 規模에 따라 對外活動의 範圍에多少의 差異는 있겠지만 이 問題亦是 施設, 裝備와 아울러 專門職을 配置하는 等 對外奉仕體制의 確立이 切實히 要請된다.

이 對外奉仕體制의 確立은 마을 文庫活動을 支援할 수 있는 原動力이 될 것이다. 이 體制의 確立이 具備되지 않는限 마을 文庫의 持續的인 効用을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다.

#### (6) 公共圖書館의 財政

① 法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公共圖書館이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고 있으나 現在 使用料를 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는 實情이므로 이는 將次法을 改正하여 廢止하는 것이 賢明할 것이다.

② 法第19條에 依하면 國庫는 公共圖書館을 設置經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對하여 補助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그立法의 精神을 最大限 살리는 뜻에서도 國庫補助에 依한 政府의 公共圖書館育成施策이 切實히 要望된다.

一例로 美國에서는 政府補助 20% 州政府補助 20% 地方自治團體負擔 60%로서 圖書館財政이 調整되 있음을 參考로 附記한다.

現在 우리 나라의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的 負擔이 너무 過한 實情이므로 特히 그려하다.

③ 從來의 目的稅이던 教育稅를 復活하여 그 一部가 圖書館의 財政으로 充當되도록 講究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不然이면 諸外國의 例와 같이(우리 나라로서는 좀 어렵겠지만) 亦是 目的稅로서의 圖書館稅를 徵收하는 問題를 講究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消防署는 地域社會가 必備해야 할 社會機關이다. 目的稅로서의 消防稅는 消防機關의 財源이다.

매 한가지로 公共圖書館도 地域社會의 必須不可缺한 社會教育機關이므로 圖書館稅를 徵收하는 것이 國民文化發展의百年大計를 위해 必要할 것이다.

#### (7) 所屬廳의 一元化問題

1966年 3月末 集計에 依하면 全國의 公共圖書館數는 52個館이다. 이 中 8個館이 私立公共圖書館이므로 이를 除하면 44個館이 公立公共圖書館으로 되어 있다.

44個館中에서 12個館은 市郡敎育廳에, 나머지 32個館은 市郡 地方自治團體에 각各 分屬되어 있다.

政府組織法, 教育法, 圖書館法에 依하면 文敎部는 圖書館에 關한 最高行政機關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市, 道敎育委員會가, 또 그 아래는 市, 郡敎育廳이 圖書館行政을 管掌하기로 되어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12個館만이 法行政體系 밑에 있고 32個館에 達하는 大部分의 公共圖書館은 內務部長官一道知事一市長, 郡守의 所管 밑에 屬해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文敎部가 圖書館行政을 等閑하게 하고 있는 真證據가 되는 것이므로 兩分되어 있는 圖書館行政體系를 하루 速히 文敎部 奉不의 管掌으로 一元化해야 할 것이다.

公共圖書館이 不振하는 原因의 하나는 叙上과 같은 矛盾 속에서 運營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敎育廳에 所屬된 12個館은 例外 없이 管理課에 屬해 있으나 市郡廳에 屬해 있는 32個館은 그 所屬課가 總務課(內務課), 財務課, 社會課, 公報室等으로서 그 所屬狀態가 千態萬象이다.

따라서 市郡廳에 屬한 32個館에는 文敎部의 行政力이 全然 미치지 못하고 있는 狀態이다. 市長, 郡守 奉下에 所屬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過去에 公立(道立, 市立)中等學校에 關하여 教育行政力이 強力하게 麥될 수 있었듯이 文敎部는 內務部와 좀 더 有機的인 協調 밑에 行行政力이 發揮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8) 示範公共圖書館의 開發

各級公共圖書館의 普及과 開發을 위하여 市, 道單位의 地域別로 示範이 複數한 1個의 公共圖書館을 選定하거나 設置하여 示範公共圖書館으로서 育成開發할 必要가 있다.

### (9) 道, 市, 區, 郡單位의 公共圖書館設置

道立, 市立(大都市는 區單位로 設立)郡立公共圖書館을 年次(長期 또는 中期)計劃에 依하여 設置하도록 促求한다.

① 1966年 3月末 集計에 依한 52個館의 設立別 現況을 보면 特別市立 2, 直轄市立 1, 道立 1, 市立 18, 郡立 22, 私立 8로 되어 있다.

② 現行 地方自治團體數는 2市 9道 30市 139郡 都合 180個團體로 되어 있다.

③ 180個自治團體 중에서 43個團體만이 圖書館을 設置運營하고 있는 셈이며, 나머지 8道, 13市, 117郡 都合 138個團體에는 公共圖書館이 없는 實情이다.

④ 서울, 釜山, 大邱, 仁川(1968. 4. 1. 부터 4區制實施)等 大都市의 區는 都合 19區인바 이들 都市에는 區當 1個館 끝의 公共圖書館 建立이 要請된다.

⑤ 또한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全州 等 大中規模의 都市에는 中央館을 母體로 하는 大量의 分館의 設置가 必要하다.

⑥ 郡立 밑에는 面單位(1,407面)의 分館設置가 必要하다. 이려한 郡立과 面單位의 分轄은 마을 文庫와의 紐帶를 끊게 될 것이다.

⑦ 國立, 市道立, 市立(中央館, 區單位 1個館, 分館)郡立, 面單位分館, 마을 文庫等과 같은 體系는 全國의 圖書館網을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⑧ 마을 文庫는 特히 市立, 郡立, (面分館包含)等 上位의 圖書館에서 實施하는 自動車文庫 巡回文庫等의 奉仕惠澤을 받게 됨으로써 寄托所(또는 配本所)와 같은 性格을 떠면서 部落의 圖書館(郡立乃至 面分館의 分身)口實을 하게 될 것이다.

### (10) 私立公共圖書館設置의 勸獎과 私設讀書室의 團束

公立의 公共圖書館數가 絶對的으로 不足한 實情에 비추어 民法의 規定에 依한 法人(法第14條)이 私立의 公共圖書館(法第20條)을 設置運營하는 경우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經費의 一部를 補助(法第21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補助制度를 強力히 推進한다면 私立의 公共圖書館이 크게 普及될 것이다. 이에 對한 國家의 對策이 切實히 要請된다.

한편 大中都市에 主로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設讀書室(社會의 問題의 施設)이 아무리 한 法的根據 없이 混濁하고 있음은 公立의 公共圖書館이 絶對的으로 不

足할뿐아니라 區單位의 圖書館 또는 分館設置의 必要性이 아주 時急하다는 實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法을 改正하여 이와 같은 不法의 인似而非施設을 團束할 수 있도록 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法第25條에 依하면 初中高等學校에 圖書館을 設置하도록 義務規定化하고 있으므로 이 年次計劃으로 全體 各級學校에 圖書館을 設置함으로써 不法의 私設讀書室設置의 旗出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 4. 大學圖書館의 育成

#### (1) 大學圖書館施設基準制定

現行의 大學設置基準令에는 圖書館關係 條項에 藏書數만 規定되어 있으므로 圖書館 建物의 各部門別坪數 및 閱覽席數 等을 包含하는 合理的인 大學圖書館 施設基準을 制定하여야 한다.

#### (2) 主題別 部署組織制度의 確立

現在 大部分의 大學圖書館은 資料의 單純한 貸與만 實施하고 있다. 各 專攻分野別로 專門의 圖書館 奉仕를 實施하기 為하여서는 그 大學의 教育課程에 따른 主題別 部署組織制度가 確立되어야 한다.

따라서 令第16條3項에 依한 司書職員의 規定은 不合理하므로 이를 改定하여야 한다.

### 5. 學校圖書館의 育成

#### (1) 圖書館設置의 推進

法第25條에 依한 1校 1圖書館 設置를 年次計劃에 依하여 強力히 推進해야 한다.

#### (2) 學校圖書館施設基準制定

法第25條 2項에 依據하여 合理的인 學校圖書館施設基準을 制定해야 한다.

#### (3) 市·道敎委에 圖書館專擔獎學士 配置

市·道敎委員會에 圖書館專擔 奬學士를 配置해야 한다. 慶尚南道敎委員會는 1962年以來 圖書館專門訓練을 받은 司書教師를 奬學土로 起用하여 育成計劃과指導에 依하여 한 結果 圖書館分野에 있어서 他의 追從을 許諾하지 않음의 程度의 發展을 보이고 있다.

#### (4) 司書教師 T/O의 確保

令第6條 1項 및 2項에 依한 司書教師의 T/O를 年次計劃에 依하여 確保해야 한다.

#### (5) 圖書館運營指針의 作成·配付

文敎部長官名儀의 學校圖書館運營指針을 作成 示達해야 한다.

韓國圖書館協會의 學校圖書館基準(1967)은 그 좋은 參考資料가 될 것이다.

#### (6) 圖書館教育課程의 作成·配付

自律學習의 能力を 培養하기 為하여서는 圖書 및 圖

書館利用法에 대한 正規教育을 實施하여야 할 것이므로, 現行初中等學校 教育課程의一部分 또는 別途의 圖書館教育課程을 作成 示達하여야 한다.

春川敎大 附屬國民學校와 馬山聖旨女子中高等學校의 試案은 그 좋은 參考資料가 될 것이다.

#### 6. 司書職의 海外留學

將次의 政府圖書館部署擔當者, 大學圖書館 및 大都市公共圖書館長, 圖書館學科 教授 等高位司書職을 養成하기 為하여 韓國政府資金 또는 外國政府 및 大學의 奨學金 等으로써 有能한 司書專門職을 美國 其他 外國에 派遣하여 積士 또는 博士課程을 履修시켜야 할 것이다.

#### 7. 外國專門家의 招聘

圖書館政策立案, 圖書館建築設計, 圖書館教育計劃樹立(大學課程 및 現職教育을 為한) 等에 關하여 文敎部長官을 諮問할 外國의 圖書館學教授級 專門家를 招聘하여 文敎部에 常駐시켜야 한다. 日本은 戰後에 이 方法을 採擇하여 巨成果를 올렸던 것이다.

#### 8. 司書職에 대한 處遇改善

##### ① 研究手當의 支給

各級 公共圖書館을 비롯한 國立中央圖書館, 國公立大學圖書館의 司書職은 幅 넓은 學識과 德性을 바탕으로 高度의 專門性과 複雜多岐한 技術性을 지닌 特殊職種인 同時에 大學教授와 같은 研究職種이므로 그 處遇改善의 하나로서 研究手當을 支給하여야 할 것이다.

圖書館法 第2條, 第3條2項, 3項, 4項, 第15條4項, 第17條4項에 調査, 研究에 대한 目的과 機能等이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이 司書職의 研究機能의 發揮를 위해서 이러한 立法精神 밑에 研究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특히 圖書館이나 博物館은 類別나기 清貧한 性格을 具する 機關이므로 이에 從事하는 司書職이나 學藝職들이 어느 程度 安心하고 研究奉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切實히 要請된다.

實例로 立法院에 屬한 國會圖書館 司書職에게는 이미 1967年度부터 研究手當을 支給하고 있다.

##### ② 時間外勤務手當(特勤手當) 支給의 合理化

現在 各級 公共圖書館에서는 館에 따라 多少 差異는 있으나 아침부터 밤 늦게 까지(早朝開館, 夜間開館)開館은 忽論 半休日開館, 休日特別開館을 하고 있으나 職員에 대하여 正當한 時間外勤務手當을 支給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現在 至極히 僅少한 額數를 支給하고 있는 實情으로 館마다 千態萬象이며 그나마 全然 支給치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와 같이 公共圖書館 職員의 勤務의 性質이 特殊하며 또한 平均 勤務時間이 12時間에 達한 뿐아니라 빈번하고도 恒久의in 特勤이 要求되므로 이에 대한 恒久의in 基本對策으로서 手當制度가 마련되어야 겠다.

##### ③ 司書職의 別定職化

무릇 教育은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으로 二大別된다. 學校教育에 從事하는 教師와 教授를 學校教育者라 한다면 圖書館, 博物館과 같은 社會教育機關에 奉仕하는 司書職과 學藝職은 社會教育者라는 定義를 當然히 내릴 수 있는 것이다.

教師와 教授를 直接教育者라 한다면 司書職과 學藝職은 圖書館資料나 博物館資料를 媒介로 하여 奉仕를 提供하므로 間接教育者라 할 수 있다.

教師와 教授가 別定職으로서의 待遇와 保障과 權威를 받고 있듯이 司書職과 學藝職도 매한가지로 前者와 같이 別定職化하여 待遇하여야 한다는 論理가 明確하게 成立된다.

그러므로 司書職과 學藝職은 一般公務員制度로부터 分離하여 教育公務員과 같이 社會教育公務員으로서 處遇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現在 先進諸國에서는 司書職이나 學藝職이 教授와 同等하게 待遇를 받고 있다.

特히 圖書館은 教育系統의 한 分野로서 初, 中等, 大學에 있어서는 教育의 心臟이라 일컬어질 程度로 莫重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地域社會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은 民衆의 綜合大學(people's university)이라고 한다. 綜合大學이 學問의 모든 分野를 網羅하는 最高의 教育機關이듯이 公共圖書館은 社會의 모든 分野에 從事하는 一般大衆이 畢生托록 自己向上에 必要한 知識을 얻는 最高의 社會教育機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이 極히 不振하고 있는 原因中의 하나는 有能한 人材(專門職)의 投身乃至는 採用이 없기 때문이다, 現在의 窮은 傳統, 薄은 待遇(薄俸) 밑에서는 知德을 兼備한 專門職이 到底히 배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司書職을 別定職화하여야 한다는 主張은 다음과 같은 點(奉仕의 多樣性)에서도 至當하다는 論理를 찾을 수 있다.

##### 1) 公共圖書館의 性格

- a. 地域社會의 社會教育機關으로서 國民敎育과 社會文化發展에 寄與한다.
- b. 圖書館奉仕라는 概念에서 볼 때 地域社會의 서어 비스 機關이다.
- c. 地域社會의 文化機關으로서 各種, 文化資料를 蘫集, 提供한다.
- d. 各種資料를 整理保管, 提供하는 地域社會의 인포

- 메이션 센터이다.
- e. 地域社會의 調查研究機關으로서 各種 統計를 비롯한 調查, 研究資料를 審集, 提供한다.
- 2) 公共圖書館의 機能(法第15條)
- 圖書館資料를 審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의 利用에 供하고 그 相議에 응하는 일
  - 讀書會, 研究會, 鑑賞會, 展示會, 其他行事를 主催하거나 嘉獎하는 일
  - 다른 公共圖書館 또는 學校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과 協力하여 圖書館資料를 相互 交流하는 일
  - 圖書館業務에 관하여 調查研究하는 일
- 3)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法第17條) 法第15條에 規定한 事項 以外에
- 國家에 關한 文獻의 審集 및 保存
  - 國內外 書誌의 作成 및 그 紹介
  - 圖書館資料의 國際交流
  - 圖書館學에 대한 調查研究
  - 他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業務에 관한 指導 및 援助
- 4) 司書職의 資質
- 美國圖書館協會가 提示한 司書職의 資質 33個項
    - 正確性
    - 事實에 對한 記憶力
    - 忍耐性
    - 責任性
    - 作業組織의 能力
    - 指導力
    - 實行力
    - 判斷力
    - 外貌의 端正
    - 健康
    - 態度(禮儀)
    - 自信力
    - 公平性
    - 明朗性
    - 親切性
    - 創意性
    - 應用性
    - 活潑性
    - 批評的 態度
    - 勇氣
    - 協助性
    - 誠實性
    - 圖書館에 對한 關心
    - 公共圖書館과의 關係
    - 讀書의 習慣
- 5) 圖書에 對한 知識의 適應性
- 6) 地域社會에 對한 知識
- 7) 積極性
- 8) 人事에 對한 公平性
- 9) 部下에 對한 公正性
- 10) 指示力
- 11) 訓練에 關한 能力
- 12) 監督力
- b. 日本文部省의 學校圖書館 經營指針에 提示한 專門職 司書教師의 資質
- 教育過程, 指導法, 學校經營의 理解
  - 資料에 對한 知識, 教材에 對한 情報
  - 指導의 經驗, 被教育者의 觀察 및 理解
  - 圖書館經營의 專門的 知識, 教養, 技術習得, 圖書館組織, 運營能力과 情熱
  - 利用者에게 利用의 興味를 일으켜 주고 利用方法을 가르치는 能력
  - 文化에 對한 考察, 理解力, 包容力
  - 圖書와 讀書生活의 愛好, 健康한 讀書人이며 讀書에 耽溺한 審集狂이 아닐 것
- 13) 奉仕精神의 發揮
- 14) 計劃性과 實行力
- 15) 統率力과 說得力과 協調力
- 16) 民主的 態度
- 17) 敏感하고 適切한 措置
- 18) 利用者와 人間의 接觸을 같이 한다.
- 19) 明朗, 快活
- 20) 忍耐性
- 21) 公正한 判斷力
- 22) 公平한 態度
- 23) 注意力과 正確한 事務의 處理
- 24) 創意的 研究와 經營能力
9. 韓國圖書館協會의 強化
- 法第13條에 規定된 韓國圖書館協會의 自立策으로서 다음 事項을 建設한다
- 協會會館 建立에 必要한 資金의 援助
  - 協會自立을 為한 直營印刷所設置에 必要한 資金의 援助
  - 現在의 政府補助金額을 最少限 增加시킨다.
10. 國家圖書館委員會의 設置
- 上記 9個項 및 其他 圖書館育成策에 關하여 大統領을 話問할 國家圖書館委員會를 設置하도록 한다.
- 同委員會는 大學總長級, 言論人, 學術・藝術院長, 韓國圖書館協會長 및 若干의 司書專門職(大學教授級)으로써 構成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